

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70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년 5월 26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온라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을 다자녀 가족의 모든 자녀로 확대하여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,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제한 규정 삭제 (안 제7조제1항제6호)
- 나. 재혼가정 자녀 순위 산정 관련 단서 삭제 (안 제7조제1항제6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사회보장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- 다. 협의사항
 - (1) 창의규제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 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제출
 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
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의견 있음(미반영)

- (양성평등담당관 의견) 「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상 ‘다자녀 가족’ 기준에 준하여 둘 이상 자녀 양육 가족으로 대상 확대 제안

⇒ (미반영 사유) 타당성 인정되나, 일시에 2자녀 가구 전체로 확대하는 경우 급격한 예산 소요로 인해 사업 안정적 운영 저해 우려 있으므로 재정 여건 및 연차별 성과 기반으로 순차 확대 검토

(5) 규제개선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
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 해당없음

라. 기타

(1) 입법예고 (2026. 3. 12. ~ 4. 1.) 결과: 의견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김미진 (☎ 2133-9279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9호 중 “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3호”를 “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3호”로 한다.

6.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족의 아동·청소년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교육지원 사업) 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6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제10호 및 제11호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더라도 지원 대상으로 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<u>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족의 둘째 자녀 이상의 아동·청소년으로,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의 순위로 정한다. 다만, 재혼가정</u> <u>의 경우 「주민등록법」이나 「가족관계등록법」상 공부로 증명되는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 수에 포함하되,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위</u>에 포함한다.</p> <p>7.·8. (생략)</p>	<p>제7조(교육지원 사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족의 아동·청소년</u></p> <p>7.·8. (현행과 같음)</p>

9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3호의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·청소년

10. ~ 12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9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3호-----

10. ~ 12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조(교육지원 사업) 제1항 제6호를 개정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 확대

- 세 자녀 이상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을 둘째 자녀 이상 아동·청소년에서 자녀 전체로 확대(제7조제1항제6호)

나. 제7조 제1항 제6호 관련 전제

- 통계청 2024년 인구총조사 결과 중 서울특별시의 ‘미성년자가 있는 자녀수별 가구’ 자료를 활용하여 대상 인원 증가분을 산출(50,381명)
 - ‘자녀 수가 3명 이상 있는 가구’에서 대상 인원이 1명씩 증가하는(둘째 자녀 이상 지원→ 모두 지원) 것이므로, ‘자녀 수가 3명 이상 있는 가구 수’만큼 대상 인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제
- 증가한 대상 인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, 특화 프로그램, 멘토링, 교재 제공 비용 등 산출하여 적용
 - 대상인원 증가분에 2026~2030년 예상 가입률을 적용하여 연도별 인원 산출
 - ※ 연도별 예상 가입률은 2026년 10%, 2027년 15%, 2028년 20%, 2029년 25%, 2030년 30% 적용
(’21년 신규 가입률 10% 기준(’21.8월~12월), ’25년까지 연평균 가입자 증가율 5%p 증가 전제)
- 비용은 2026년 7월부터 발생하며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추계기간: 5년(2026년~2030년)

라. 방법

-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양육 가구 수, 서울런 운영 현황 등을 근거로 추계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총 비용 는 13,700,128천원(연평균 2,740,026천원) 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				
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지출	지원대상 확대 (안 제7조 제1항 제6호)	773,394	2,154,456	2,872,607	3,590,759	4,308,911	13,700,128
	소계(a)	773,394	2,154,456	2,872,607	3,590,759	4,308,911	13,700,128
수입	-	-	-	-	-	-	-
	소계(b)	-	-	-	-	-	-
□ 총 비용(a-b)		773,394	2,154,456	2,872,607	3,590,759	4,308,911	13,700,128

4. 재원조달 방안: 시 예산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				
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비		-	-	-	-	-	-
시비	지방세수입	773,394	2,154,456	2,872,607	3,590,759	4,308,911	13,700,128
	세외수입	-	-	-	-	-	-
	지방채 등	-	-	-	-	-	-
민간		-	-	-	-	-	-
기타		-	-	-	-	-	-
합계		773,394	2,154,456	2,872,607	3,590,759	4,308,911	13,700,128

II. 비용추계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-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(교육지원 사업) 제1항 제6조 개정에 따라 지원대상 확대 시 비용 발생

2. 세부추계내역

- 1인당 단가: 526,317원*

- 산식: 23,684,282,000원(2026년 서울런 예산) ÷ 45,000명(2026년 목표 인원)
= 526,317원

*2026년 편성 서울런 예산(온라인 콘텐츠, 특화 프로그램, 멘토링, 교재 제공 등)과 목표 인원(45,000명) 적용하여 1인당 소요 예산 산출

- 2026년: 773,394,323원

- 산출방식: 연도별 월평균 가입인원(명) × 1인당 단가(원) × 6/12(개월)
= 2,939명 × 526,317원 × 6/12(개월)
= 773,394,323원

- 2027년: 2,154,455,613원

- 산출방식: 연도별 월평균 가입인원(명) × 1인당 단가(원)
= 4,093명 × 526,317원
= 2,154,455,613원

- 2028년: 2,872,607,484원

- 산출방식: 연도별 월평균 가입인원(명) × 1인당 단가(원)
= 5,458명 × 526,317원
= 2,872,607,484원

- 2029년: 3,590,759,355원

- 산출방식: 연도별 월평균 가입인원(명) × 1인당 단가(원)
= 6,822명 × 526,317원
= 3,590,759,355원

- 2030년: 4,308,911,226원

- 산출방식: 연도별 월평균 가입인원(명) × 1인당 단가(원)

$$= 8,187\text{명} \times 526,317\text{원}$$
$$= 4,308,911,226\text{원}$$

※ 연도별 월평균 가입인원: 대상인원에 연도별 예상 가입률 적용 후 월별 균등 증가 가정하여
해당 연도 평균 인원 산출